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0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서일준·강민국·권영세

金炳旭・김성원・김영식

김용판 · 김태흠 · 김형동

서병수 · 이종성 · 임이자

하영제 · 한무경 · 허은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 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근 거규정이 없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0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생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	②
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다.